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정 관

2019년 3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상 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라홀딩스라 하며, 영문으로는 Halla Holdings Corporation 으로 표기한다(이하 "회사"라 한다).

제2조 (목 적)

회사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3.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교육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7.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8. 시스템 개발, 통합(SI) 및 운용(SM) 사업
9.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및 임대업
10. 각종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 임대업
11. 스포츠클럽 운영업
12. 운동기구 및 일용잡화 판매업
13. 스포츠 용품 도·소매업
14.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제조, 수리, 재생, 재제조, 판매업
15. 자동차수리, 정비업 및 관련장비 판매업
16. 차량용 연료 판매업
17. 차량관리 대행업
18. 보험대리점업
19. 냉동기 및 공기조절기(장치) 수리, 제조, 재생, 재제조, 판매업
20. 상품연쇄화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21. 건축공사업 및 전문공사업
22. 상품중개업
23.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대업
24.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 수리, 재생, 재제조, 판매업
25.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수리, 재생, 재제조, 판매업
26. 금속 및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 판매업

27. 인터넷 유무선 전화번호 검색, 안내 및 지도정보 서비스업
28. 인터넷 광고 및 광고대행업
29.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30. 국제물류주선업
31. 육상, 해상, 항공 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32. 화물운송대행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33. 화물운송주선업
34. 물류 시설, 장비, 용기의 제작, 임대업 및 관련 서비스업
35. 물류센터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36. 화물포장업
37. 공동 및 복합물류사업
38. 창고업
39. 물류 컨설팅업
40. 건축재료 도,소매업
41.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소매업
42. MRO 도,소매업
43. 통신판매업
44.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판매업
45.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46. 사료 및 사료원료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47. 자전거, 자전거 부품 및 기타 관련 상품의 제조, 조립, 수리, 도·소매
48.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부품 및 기타 관련 상품의 제조, 조립, 수리, 도·소매
49. 고철 수집, 운송, 가공처리, 도·소매
50. 농기계, 운반기계 기타 관련 상품의 제조, 조립, 수리, 도·소매
51.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2. 종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53. 수출입업 및 대행업
54.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55.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56.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57. 주차장과 복합환승센터 및 동 관련 편의시설 운영
58. 토지구획 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
59. 공동주택관리업
60. 시설물 유지관리업
61. 항만, 철도, 공항, 교량, 터널, 도로, 터미널 및 동 관련 편의시설 운영

- 62. 별정통신사업
- 63. 부가통신사업
- 64. 정보통신공사업
- 6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66.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7.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제3조 (사무소의 위치)

- ①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공장, 지점, 연락사무소, 대리점 및 해외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 ①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llaholding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다.
- ② 회사가 법령에 따라 신문에 광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①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만(10,000)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오천(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②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 등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③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및 제2항의 사무취급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해 주식 등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정한 방법에 따르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사 채

제15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 (주주총회의 종류 및 운용)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

다.

- ③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총회 결의의 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의결한다.
-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1. 2014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는 회사의 분할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인 법인(이하 "분할 당시 최대주주 법인")에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2. 회사가 분할 당시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회사 자기자본의 2.5% 이상(연간)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다만,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매수는 제외됨)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모든 사안에 관하여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그 명의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각 주주총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위원회)

- ①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32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된다.

제34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임시이사회는 어느 이사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 영업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 운영 및 결의)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상법 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2.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3.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자기주식에 대한 교환사채의 발행
 4. 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 이외의 신규 사업에의 진출(타회사 또는 사업부문의 인수, 자회사의 설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6.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8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0조 제④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금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회 규칙)

이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이사회 규칙에 따른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5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회사의 계산

제46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정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외부 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1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매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2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8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36조, 제39조,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 제50조,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3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9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9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제 10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1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